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의회장이 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처리 직원 임명〉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79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9.
3. 회부연월일 : 2025. 4.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문적인 보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에도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규정한 2021년의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시·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모두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도회의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회의의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은 시·도회의의장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현 행	개정안
제29조의3(시·도회의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①·② (생략)	제29조의3(시·도회의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u>시·도회의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u>	③ ----- <u>시·도회의의 의장이</u> -----.
	부 칙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도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도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에 관하여 교육감이 한 행위는 제29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회의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¹⁾에서는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고, 해당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도의회회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²⁾로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무직원의 정원을 정하고, 해당 사무직원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교육감의 인사명령에 따라 의회 사무처의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등에서 위원회 지원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³⁾.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①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도의회회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의회 사무처 정원을 정하고 있음. 다만, 대구광역시의 경우 의회 사무처 정원을 따로 정하지 않고 교육청 본청 정원에 포함하여 운용함.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8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6명
2.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7,128명
3. 교육전문직원 정원 742명

3) 해당 사무직원 정원은 「지방자치법」(제103조)의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교육감 소속 정원임.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교육감 소속 의회 사무처 사무직원 정원 및 현원>

(2025. 4. 22.기준 / 단위: 명)

시도 교육청	의회 사무처 정원				교육위원회 현원				타 위원회 현원 (6급 이하)	현 원 합 계	비 고
	4급	5급	6급 이하	소 계	4급 전문위원	5급 전문위원	6급 이하	소 계			
서 울	-	1	5	6	-	1	2	3	3	6	
부 산	1	1	7	9	1	1	4	6	3	9	
대 구	-	1	4	5	-	1	4	5	0	5	
인 천	1	1	6	8	1	1	6	8	0	8	
광 주	1	-	4	5	1	-	3	4	1	5	
대 전	1	-	8	9	1	-	7	8	0	8	결원 1
울 산	1	1	6	8	1	1	6	8	0	8	
세 종	1	1	3	5	1	1	2	4	1	5	
경 기	1	7	13	21	1	2	3	6	14	20	결원 1
강 원	1	1	3	5	1	1	3	5	0	5	
충 북	1	1	5	7	1	1	3	5	2	7	
충 남	1	1	6	8	1	1	3	5	3	8	
전 북	-	-	8	8	-	-	3	3	5	8	
전 남	1	1	5	7	1	1	5	7	0	7	
경 북	1	-	5	6	1	-	2	3	3	6	
경 남	-	1	4	5	-	1	2	3	2	5	
제 주	1	1	4	6	1	1	4	6	0	6	
계	13	19	96	128	13	14	62	89	37	126	

※ 행정·기술·관리운영 직군 일반직공무원(숙직직렬 일반직공무원 임가제공무원 전문경력관 정원 외 파견 근무자 제외)

(자료: 교육부)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처에 두는 ‘교육감 소속 의회 사무처 사무직원’ 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의회 사무처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 폐지(2014.6.30.) 이후 교육위원회를 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한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감 소속 의회 사무처 사무직원 관련 연혁>

시 행 일	지원조직	지원사무	사무직원 임명	근거 법령
2010. 8. 31. 이전	의 사 국	교육위원회 사무 처리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	「교육자치법」 제17조(의사국의 설치등)
2010. 7. 1.	시·도의회 사 무 처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교육자치법」 제17조(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
2015. 12. 23.	시·도의회 사 무 처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교육자치법」 제29조의3(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 2015. 6. 22. 신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자료: 교육부)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제103조)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⁴⁾. 이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및 견제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인력운영의 자율성 부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 지방의회-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⁵⁾.

개정안은 교육감 소속 의회 사무처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현행 교육감이 아닌 시도의회의회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시도의회에 두는 모든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의회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임.

현행 교육위원회의 경우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로서 해당 위원회 소속 사무직원의 직무가 위원회 지원 및 협력 등으로 타 상임위원회 사무직원의 직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4)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5)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 전 규정 사항>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사무기구 인력 운영 자율성 제고라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사무처 사무직원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할 필요성에 공감
- 다만,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적 사무 지원 및 교육자치 기능 확보를 위하여 교육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를 교육감이 추천하는 절차 필요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제도 폐지('14.6.30.) 이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교육전문인력을 두어 의회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됨

【교육청】

- (16개 시도교육청*) 교육분야의 특수성 및 시·도의회와 교육청 간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고려하였을 때, 현행유지(시·도의회의장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필요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교육청
- (경기교육청) 지방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적인 사무지원을 위해 교육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을 교육감이 추천하고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문 의 처

02)6788-5185

<참고>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현황>

(2025. 4. 22.기준 / 단위: 명)

시도 교육청	교육청 소속(속기 제외)				시·도의회 소속(정책지원관 제외)				합 계	교육청 비 율
	4급 전문위원	5급 전문위원	6급 이하	소 계	4급 전문위원	5급 전문위원	6급 이하	소 계		
서 울	-	1	2	3	1	2	4	7	10	30.0
부 산	1	1	4	6	-	-	-	0	6	100.0
대 구	-	1	4	5	-	-	1	1	6	83.3
인 천	1	1	6	8	-	-	1	1	9	88.9
광 주	1	-	3	4	-	1	1	2	6	66.7
대 전	1	-	7	8	-	-	1	1	9	88.9
울 산	1	1	6	8	-	-	-	0	8	100.0
세 종	1	1	2	4	-	-	-	0	4	100.0
경 기	1	2	3	6	-	-	-	0	6	100.0
강 원	1	1	3	5	-	-	-	0	5	100.0
충 북	1	1	3	5	-	-	-	0	5	100.0
충 남	1	1	3	5	-	-	1	1	6	83.3
전 북	-	-	3	3	1	1	1	3	6	50.0
전 남	1	1	5	7	-	-	-	0	7	100.0
경 북	1	-	2	3	-	1	1	2	5	60.0
경 남	-	1	2	3	1	-	2	3	6	50.0
제 주	1	1	4	6	-	-	-	0	6	100.0
계	13	14	62	89	3	5	13	21	110	80.9

※ 행정·기술·관리운영 직군 일반직공무원(속기 직렬 일반직공무원 임가제공무원 전문경력관 정원 외 파견 근무자 제외)

(자료: 교육부)